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상담 현황

상담일자	상담내용	답변내용	처리현황
2021.9.16.	외부강의시 강연비와 원고료는 따로 구분해서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강원대학교병원임직원행동강령 별표2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있어 상한액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함을 안내	완료
2021.12.10.	병원 직원 신분으로 법인 설립에 있어 발기인으로 참여 가능한지 문의	병원 규정 복무규정 제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직원은 병원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학회의 임직은 예외로 한다. 강원대학교병원정관 제6조(겸직금지) 병원에 상근하는 임직원(겸직교원을 포함한다)은 병원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병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다. 다만, 소속학회의 임직원은 예외로 한다. 따라서 참여 불가능함을 안내	완료
2021.12.29.	Zoom을 통한 회의 또는 강의 시행 시 외부강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	외부강의등이란 직위, 직급,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 그 형태를 갖춘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해야 함. 하지만, 다수가 아닌 1:1 정보 전달의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안내	완료